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5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3명)을 증원하고,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정원 4명(6급 1명, 8급 3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 천문관측 전시·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 나.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다.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광주센터의 사이버침해 대응 총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1명(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명(8급 1명),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각각 이체함.

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홍수계측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휴대 가능한 실시간 중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정책보도 취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핵심 정책소통 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함.

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급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함.

사.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아.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자.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유산의 발굴 및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함.

차.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의 학예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카.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3. 6. ~ 3.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1의2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0명”을 “8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3명”을 “45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2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8명”을 “9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5명”을 “12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5명”을 “12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4명”을 “35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2명”을 “63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3명”을 “7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7명”을 “21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4명”을 “33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6명”을 “264명”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활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8급 1명)은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

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체받는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받는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별표 1의3]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대통령령 제000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명칭	소속	직무	총 정원의 한도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영어 공교육 지원,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74명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4명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1명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5명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	159명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59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 등	329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재	91명

		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항	95명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156명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 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	12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119명
한국농수산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26명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공급, 품종보호제도 운영, 종자산업 육성지원과 종자 생산·유통 및 수출 지원, 종자 품질검정서비스 제공 및 종자검정 기술 연구 개발 등	218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 및 정신보건연구에 관한 사항	336명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131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3명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8명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5명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의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6명
국립목포병원	질병관리청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의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7명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55명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국가생물자원(정보 포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전시·교육·홍보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17명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2명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관한 사항	60명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측량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7명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개선과 그 이행, 국가 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항공교통본부	국토교통부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기 관제 제공, 경보업무,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공역관리, 항공교통 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35명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635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	26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양수산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측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	48명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관한 사항 등	142명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청	관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외국세관직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탐지견의 훈련·평가 및 훈련시설의 관리, 관세사 자격시험 등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56명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 통계 개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3명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의무경	648명

		찰의 질병 진료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	소방정책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화재·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및 감정, 현장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42명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07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해양유물의 조사·연구·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항	76명
궁능유적본부	문화재청	조선의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 및 창경궁)과 종묘 및 왕릉(능·원·묘)의 보존관리, 복원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1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 및 종묘생산에 관한 사항 등	333명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24명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 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6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0명
국립수목원	산림청	산림 내 식물, 곤충, 선대류 및 지의류 등 각종 생물종과 관련한 연구·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7명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14명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	기상·기후와 지구시스템 분야에 대한 관측·분석·예측·응용기술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등	118명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42명

비고

1. 국립재활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8급 1명)은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5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3.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사 3명)은 2026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5.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사 1명)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6. 국립기상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2